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

1997. 7.

최 의 철
(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)
김 병 로
(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)
이 금 순
(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)



-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.
-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.

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

- 목 차 -

Ι	[.	문제제기	1
П	Í.	북한인권 현황	2
	1.	북한내 인권상황	2
	2.	북한이탈주민 현황	7
	3.	북한의 대응	10
П	1.	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	13
	1.	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	13
	2.	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	13
	3.	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	17
IV	7.	정책적 고려사항	19
	1.	북한인권 개선대책방향	19
	2	북하이탈주민 정착지워체계 구축	22

I. 문제제기

- ○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하에 일인독재통치를 정당화하는 수 령론을 주창하고 세습을 통한 체제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바, 이러 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여 왔음.
- ○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으나, 북한의 경제난·식량난 등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○국제정치에서 안보와 인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,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에도 위협요인이되고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행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4국의 공통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.
- o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,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.
- ○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.

Ⅱ. 북한인권 현황

1. 북한내 인권상황

○북한의 인권상황은 경제난·식량난의 악화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

가. 생존권 위협

- ○95~96년의 홍수피해로 인해 약 500만명(전체인구의 약 1/4)의 국 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.¹)
 - 통일원의 추계²⁾에 의하면 97.6말 현재 국제지원·수입 66만톤, 7월 이후 국제지원 확정량 27.5만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40만 톤 이상이 부족함.
 - 중앙배급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1인당 1일 배급량이 일부지역에서 96년 300g이었던 것이 97년부터 100~150g(반공기 분량)으로 줄어 들었음.

¹⁾ WFP는 아사상태에 있는 인구를 기아에 직면한 어린이 260만명을 포함한 470만명으로 평가하고 있음. 「연합통신」, (1997.3.21).

²⁾ 통일원, 「주간 북한동향」, 제337호 (97.6.28~7.4), pp. 32~36.

- ○영양실조와 질병감염으로 인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으며,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.
 - 「세계식량기구(WFP)」의 버티니(C. Bertini) 사무국장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으며,「세계보건 기구(WHO)」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감염성 설사 및 급성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함.
 - 이와 같은 참담한 실정은 황장엽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.

나, 공개처형

- ○북한은 정치범·경제범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대중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교수형이나 총살형, 혹은 화형을 실시하고 있음.3)
- ○'97.1 「국제사면위원회(AI)」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 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온 공개 처형 실태를 폭로하였음.4)
 - 동 보고서에 의하면, 70~92년 원산·청진·함흥·신의주·평산 등

³⁾ 국제사면위원회(AI)는 Journal of the Law Association for Asian and the Western Pacific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여 북한의 공개처형이 1951년 정령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⁴⁾ AI는 97년 연례인권보고서에서도 미확인 정보를 인용하여 공개처형이 진행되어 왔음을 언급함. AI,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7 (London: AI, 1997), pp. 205~206.

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되었음.

- ○식량난 및 이념약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5년 말~96년초 기간동안 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됨.
 - 황장엽은 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 처형되었다고 중언함.5)
 - 정갑열·장해성('96.5 입국)은 95년 하반기 김정일의 '친필방침' 에 따라 시·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함.
- ○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, 97 년 상반기에도 공개처형이 지속되었음.
 - 김원형('97.5 입국)은 97년 3월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증언함.6)

다. 정치범수용소

○북한은 정치사상범을 수용하는 정치범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 하고 있으며⁷⁾, 적어도 10여 곳 이상에 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

⁵⁾ Korea Herald (July 10, 1997).

⁶⁾ 이밖에도 「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」지는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. 「조선일보」(1997.5.12).

⁷⁾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존재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음. 「조선중앙통

것으로 추정됨.8)

- 평남 개천, 함남 요덕, 함북 화성·회령·청진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.
- 각 수용소는 종신수용지역인 완전통제구역과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.
- ○북한은 「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」의에 따라 '수령'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당·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'적대분자'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음.

신 (1997.6.24).

⁸⁾ 황장엽의 중언에 의하면, 정치범수용소는 56년 발생한 이른바 「8월 종파사건」에서 유래한 것이며, 최초로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된 지역은 58년말 평남북창군 소재 득장광산임.

^{9) 「10}대원칙」의 주요내용.

제1조 1항: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체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.

제3조,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.

제3조 5항: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아 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도 비상사건화하며 이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.

제3조 6항: 수령님의 초상화, 석고상, 동상, 초상위장, 수령님의 초상화를 게제한 출판물, 수령님을 형상화한 미술작품, 수령님의 현지교시판,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취급하고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
제4조 9항: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, 당의 정책을 비방중상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.

제4조 10항: 수령님의 교시와 지도자동지의 지시,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자 본주의사상, 봉건유교사상, 수정주의, 교조주의,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 당적 반혁명적 사상교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 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.

- 초급당비서, 부비서, 세포비서 등의 간부들이 분기별로 주민들 의 정치적 동향을 심사·보고함.
- 납북억류자, 북송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정치범수용 소에 수용되어 있음.
- 최근에는 김정일 비난자 및 경제문제 불평자, 체포·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라. 강제이주 및 장애인 격리수용

- ○정치적 불신자에 대한 강제이주는 물론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 의 주민들에 대한 집단이주가 계속 실시됨.
 - 황장엽의 중언에 의하면, 평양의 경우 3~4년을 주기로 주민소 개작업이 단행되고 있으며, 94년 「평양시민중」을 발급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함.
- ○도시미관과 산아제한을 위해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인들을 제한 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음.10)

마. 기타 정치적 시민적 권리

ㅇ북한은 김일성 사후 어떠한 선거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, 최근

¹⁰⁾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, 난쟁이 집단이주는 60년대경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,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수용소가 설치되었음.

방송을 통해 복수입후보제 등 경쟁선거를 비판하였음11).

-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반대의사를 기표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.
- ○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 및 사상·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.
-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모임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
 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노동교화형에 처함.
 - 헌법규정과는 달리 신앙생활은 강력히 통제되고 있으며, 근래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도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거행됨.¹²⁾
- ○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 으며, 불법구금과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.

2 북한이탈주민 현황

○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,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중국·러시아 등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으며,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및 북한 공안에 의한 체포 및 송환, 불법처형 등으로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음.

^{11) 「}민민전방송」(1996.6.13).

¹²⁾ 북한은 금년 성도절, 열반절, 석탄절 등 불교행사를 거행하면서 반정부·통일 투쟁을 선동함.

가. 국내 북한이탈주민

- ○금년 상반기('97.1~6)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명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하였음.
 - 작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51명임.
- ○최근 2년 동안 개별탈출보다 집단탈북 및 가족탈북이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, 97년 상반기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중 가족단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.
 - 97년 상반기중 가족단위의 입국은 27명(6건)으로 전체 국내입 국 북하이탈주민의 절반을 차지함.
- ○가족단위의 집단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식량난의 악화로 북한의 사회통제가 이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인 바, 이러한 추세 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나. 재외 북한이탈주민

- ○현재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은 약 1,500명 정도로 추산되며, 재외공 관에 망명을 타진한 수는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.
 - 통일원의 추정의 의하면,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 1,200명, 러시아에 300명이 불법체류하고 있음.

- 과거와는 달리 최근 탈북은 엘리트계층, 기본계층, 가족동반 탈출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○북한은 형법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및 망명 시도 등의 행위를 '반국가범죄'로 규정(형법 제47조)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.
- ○중국·러시아로부터 송환당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밀감옥 에 수용되어 고문·가혹행위를 당한 뒤 극형에 처해지고 있음.
 - '96.5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 당국에 인계된 북한이탈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 었음13)
 - '96.9 AI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 대를 크게 우려하였고, 송창근과 최경호 등 수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송화·처형되었다고 추정함.
- ○중국은 60년대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「중국·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」(일명「밀입국자 송환협정」)과 86년 체결한 「국경지역업무협정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음.
 -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'93.11 「길림성 변경관리 조례」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¹⁴⁾

¹³⁾ 일본「NHK」(1996.5.27).

^{14) 「}동아일보」의 보도에 따르면, 동 조례에 의해 94~95년 동안 중국에 불법체

- ○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「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(UNHCR)」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 등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, 아직까지 일부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음.
-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「러시아·북한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」('97.1.24)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 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
 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.

3. 북한의 대응

- ○북한은 인권에도 '계급성'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북한체제 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억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함.
 - 북한은 "자기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"의 인권은 보장하지만, "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"이 '우리식 인권'이라고 주장함.15)
- ○북한은 서구세계의 대북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'평화적 이행전략'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

류하던 탈북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됨. 「동아일보」(1996.12.26).

^{15) 「}로동신문」(1995.6.24).

으로 대처하고 있음.

- 북한은 '정치적 자주권'과 '개발권'을 앞세워 서구의 인권개선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함.
- 인권문제는 주권사항으로 외세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되며, 동 시에 정치적·시민적 권리에 앞서 경제적·사회적 권리의 보장 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.
- 또한 유엔산하 인권관련 위원회에 입후보하고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비난하는 등 대외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있음.
- ○북한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인권문제의 화살을 남한으로 돌리기 위해 한국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음.
 - '97.5.14 「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」(위원장 정준기)는 김인서, 김영태, 함세환 등 3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「한적」에 보냄.
 - 북한은 출소공산주의자인 김인서의 송환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「유엔인권위」및 국제인권기구, 국내인권단체에 지속 적으로 보내고 있음.
 - 또한 클린턴 대통령 부부('97.4.24), 미국 주요인사(6.5)에게 서한을 보냄.

o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을 계속 위협하고 있음.

황장엽의 서울도착 성명('97.4.20)에 대해 "이북을 중상하고 이남을 찬미하는 미친 자의 소리"라고 비난한 데 이어, 황장엽의 기자회견(7.10)을 '대북 선전포고'로 규정함.

Ⅲ.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

- ○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되며, 이들이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.
- ○93년「귀순북한동포보호법」시행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국가유공자 차원의 배려에서 사회부조적 차원의 특별보호로 전환,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사회정착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함.
 -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평균 4,500만원 수준에서 1,700만원 선으로 삭감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력이 현저히 저하됨.
 - 이들이 취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알선을 하는 것 은 무의미함.

2.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

가. 제도 정비

○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96년말 통일위에「인도지워국」을 신설하고、「북한이탈주민의 보

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여 '97.7.14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, 법률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1년간 정착지원시설내 보호와 2년간 거주지 보호를 실시함(법률 제5조 3항).
- 체계적인 지원(사회적응교육,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등)을 실시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함(법률 제10조).
- 북한 및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심사를 통해 인정함 (법률 제14·15조).
- ○북한이탈주민 보호문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일원을 총괄조정부서로 규정하고, 「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」를 통해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함.
- 이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호를 결정함.
 - 인도주의원칙을 바탕으로 체류국과 협의하여 보호요청자를 전
 원 국내로 송환함.

나. 사회적응교육

○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(법률 제15조, 시행령 제40조) 통일원은 구체적인 사회적응교육방안을 마련함.

- '97.5 2주간(5.19~31)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실험 교육을 실시하였음.
- 주관부처인 통일원이 유관부처와 협의하에 교육과정의 문제점
 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파악함.
- ○정착의지 제고, 민간참여 활성화, 기타 정착지원방안과의 연계라는 방향하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의 학습을 위해 기본교육을 강화함.
 - 사회적응교육은 크게 우리 사회체제에 대한 소개교육, 생활안 내교육,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됨.
 - 교육단계별로 분야별 지침서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며,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민간단체가 참여함.
- ○연령, 학력 및 경력, 탈북경로, 개별 희망사항 및 관심 등을 고려 하여 교육대상, 교과과정, 교육기간을 조정함.
 - 교육대상은 크게 청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고 교과과정은 공 통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함.
 - 교육기간을 개인성취도 및 필요도에 따라 조정함.

다. 직업훈련

ㅇ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

- 에 취업하는 것이 관건인 바, 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함 (법률 제16조, 시행령 제43·44조).
-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방 안을 마련함(시행령 제45조).
- ○북한 및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과 경력의 인정을 위해 상세한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(시행령 제38~39조), 학·경력 인정에 따른 보충교육안도 마련함(시행령 제40조).

라. 사회지원체계 구축

- ㅇ북한이탈주민들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(social supporting system)를 마련함.
 -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물질
 적 지원이나 개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구성원들의
 수용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.
 -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결혼, 개인가정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, 입양주선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함.
- ○북한이탈주민들 서로가 어려움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친목단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.

○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서로알 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상호간 이해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으 로써 전반적인 통일의식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.

3.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

- ○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수용에 관한 문제임.
 - 새로운 법률은 북한에 주소·직계가족·배우자·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(재외공관 포함)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경우, 이들을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16)
 - 새로운 법률 시행과정에서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외 공관 장에게 보호요청을 할 경우 현지국 정부의 협조없이는 전원 국내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.
- ○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남북한간의 관 할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바, 국제법상 난민처리 차원에

¹⁶⁾ 북한이탈주민의 용어 정의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1항, 인도주의 원칙은 동 법률 제4조, 보호신청은 동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.

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보면,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의 국민인 동시에 북한의 공민임.
-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관련조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「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(Principle of Non-refoulement)」¹⁷⁾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.
- 또한 이들 정부가 보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UNHCR나 국제난 민구호기구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허용해야만 함.
- ○중국·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함.
 -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·러시 아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부의 협력이 필요함.
 -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및 응급구호 의무가 현 지국에 있음을 중국·러시아 정부에 주지시킴.

^{17) 1951}년 「난민협약」 제33조 제1항은 "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Ⅳ. 정책적 고려사항

1. 북한인권 개선대책방향

○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측의 노력이 요구되나, 현상황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의지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음.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 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임.

가, 대북 직접접촉

- ○효과적인 대북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함. 국제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아 개혁·개방, 민주화 등 포괄적인 요구는 비현실적임.
 -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나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정책 은 그 효용성이 의문시됨.
- ○북한처럼 극심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대상국에게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직·간접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바, 정부는 우선적 으로 국제협약이 정하는 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함.
 - 비인도적 처형, 고문 등의 금지를 요구함.
 - 제출기한을 10년 이상 넘긴 「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

규약(B규약)」의 이행과 관련한 첫 정기보고서를 「유엔인권이 사회(UNHRC)」에 제출하도록 권고함.

- 95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형법 전문을 밝히도록 요구함.
- ○정부 및 적십자 등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납북억류 자 송환, 이산가족 상봉, 정치범수용소 폐쇄, 생존 국군포로 및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.
- O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식량난이 악화된 지역에 직접 식량을 전달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 켜야 함.
- ○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보다는 군비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, 인권문제와 군축문제 연계방안을 고려함.
- 이대북 직접접촉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지 도층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,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됨.
 - 이와 관련, 정부는 민간단체, 여론주도층 및 언론등의 북한인 권에 대한 국내외 문제제기를 적극 지원함.

나.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

- ○일반적으로 인권보장문제는 국가주권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나, 현 국제정세는 개인의 안보문제를 국제적 안보차원으로 이해하고 있 는 바, 인권문제도 국제적 안보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증대되 고 있음.
 - 도덕적으로 인간은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인 인성을 보존·보호해야 함.
 - 정치적으로 인종청소 및 의도적 기아 등 대량살상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,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배타적인 국가주권행위로 인정될수 없음.
- ○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활용하여 인권보장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기구, 국제인권단체 및 우방국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.
 - 르완다, 소말리아, 보스니아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UN,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.
- ○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·일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, 대북 식량지원 및 교류·협력확대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자적 접근을 강화

하여야 함.

- 또한 교류·협력 확대과정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
2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

○대량탈북을 염두에 둔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우리의 대비자세임. 특히 우리는 정치·경제적 안정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함.

가. 제도적 보완

- ○탈북주민들의 정착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·제도를 보완해 나감.
- 19개 유관부처와의 협조의무체계를 문서화하고, 실무담당관들 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함.
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('98.11 완공 예정) 이전에도 통일원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.
- 사회적응교육을 위해서 전문인력(담임관 및 강의요원)과 교육 보조요원(민간단체 자원봉사요원)의 확보 및 훈련이 필요하며, 강의요목 및 교수지침,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, 거주지 보호와

의 연계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.

나. 국내교육 및 홍보

- ○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 하는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함.
 - 언론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및 어려움 등을 객 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함.
 - 민간시민단체들의 참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
 후원회를 활성화함.
 -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 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.

다.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

- ○대량탈북사태를 대비하여 별도의 대응책을 수립하고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.
 -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할 때 북한내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- ○정부는 주변국들과 대량탈북의 발생유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협조체계를 구축함.

중국·러시아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심사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함.

대량난민 발생시 미국과 일본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협력을 도모함.

發刊資料目錄

〈학술회의 총서〉

- 96-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
- 96-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
- 96-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
- 96-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
- 96-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'97年 情勢 展望
- 96-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
- 97-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
- 97-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

〈研究報告書〉

- 96-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
- 96-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
- 96-03 동·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
- 96-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
- 96-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·협력 방안 연구: 다자적·양자적 접근
- 96-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

- 96-07 韓·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
- 96-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
- 96-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
- 96-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
- 96-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
- 96-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
- 96-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
- 96-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
- 96-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-협력이론을 중심으로-
- 96-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
- 96-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
- 96-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
- 96-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
- 96-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
- 96-22 한 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
- 96-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
- 96-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
- 96-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
- 96-26 북 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
- 96-27 한·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
- 96-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
- 96-29 한 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

〈統一情勢分析〉

- 96-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: 2·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
- 96-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: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
- 96-03 北韓의 對美・中政策 懸案과 展望
- 96-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
- 96-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
- 96-06 金日成 死後2年: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
- 96-07 나진-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
- 96-08 日本總選 結果分析
- 96-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
- 97-01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
- 97-02 鄧小平사후 중국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
- 97-03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
- 97-04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: 현황과 대응방안
- 97-05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

〈年例情勢報告書〉

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: 1996~1997

〈論 叢〉

統一硏究論叢 第5卷 1號(1996. 7)

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(1996. 12)

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5(1996)

〈통일문화시리즈〉

96-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(上)

96-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(下)

〈북한인권백서〉

북한인권백서 1996

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북한인권백서 1997

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

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

統一情勢分析 97~05

發行處 民 族 統 一 研 究 院

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

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-353

전화:901-2528(代), FAX:901-2542

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:266-0892

印刷日 1997년 7월 일

發行日 1997년 7월 일